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56
----------	-----

2024. 4. 30.(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박용규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4년 4월 12일

다. 회부일자: 2024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2024년 4월 23일

(제4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용규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 1. 12. 개정, 2022. 1. 13. 시행)
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1. 10. 19. 제정,

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이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청구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해야 했던 조항이 삭제 되고,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존치 이유가 사라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는 폐지한다.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폐지 이유

-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 1. 12. 개정, 2022. 1. 13. 시행)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 10. 19. 제정, 2022. 1. 13. 시행)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삭제되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던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대한 사항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되면서 청구의 방법 등이 변경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했던 사항은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를 청구하도록 변경되고 주민 조례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이 「충청북도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로 제정됨.
- 따라서 기존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가 삭제되고 새로운 법률안 제정으로 존치의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